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2일, 주철현의원 등 16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2.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6.1.13.)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3.1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주철현 의원)

현행법은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및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어촌 경제·사회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설립 및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번기에 한시적으로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용수와 관련된 저수지, 농수로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수리시설감시원은 법적 근거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라 도급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지역 주민의 대다수는 60, 70대의 고령자로서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임.

또한 2023년 함평에서는 폭우로 인한 농경지 침수를 막기 위하여 수문을 여는 작업을 하던 수리시설감시원이 사망하였으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적절한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와 관련 수리시설감시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로 하여금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위한 필요 조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에 기여

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수리시설감시원은 급수기간 중에 물관리 활동, 저수지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업무는 업무기간 내에 여름철 장마, 폭우 발생 등에 따른 안전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고, 이와 관련하여 2023년 6월 인명사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이들과 도급계약 관계에 놓인 공사(사장)의 역할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수리시설감시원 제도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공사의 내부지침인 「운영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어,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및 공사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농어촌공사법」에 ‘명예수리시설감시원’ 위촉 규정을 신설하고, 공사에게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과 관련한 의무를 부여하며,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자격, 업무 범위, 위촉·해촉 절차, 수당 지급 및 교육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수리시설감시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에게 안전 관련 의무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안 제17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공사가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입법례에서도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명예감시원 등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이나 「양곡관리법」에 따른 명예감시원 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목적 등으로 사인(私人)을 ‘위촉’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임.

다만, 현행법은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농업기반시설’로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현행법의 체계에 맞게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의 명칭인 ‘수리시설감시원’이 아닌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사용하여 “명예”를 추가하고 있음.

이는 유사 입법례에서 특정 업무에 대하여 사인(私人)을 위촉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의 명칭에 “명예”라는 표현을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임.

다만, 수리시설감시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다른 유사 입법례상의 명예감시원 제도 등과 달리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의 영역이므로, 제도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현재 운영 중인 감시원 제도 중에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 영역에 대하여는 그 제도 명칭에 “명예”를 사용하지 않고 “감시원”으로만 규정하는 입법례가 있음.

제도 명칭에서 “명예”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해당 입법례들의 취지는, “명예”의 사전적 의미가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이므로, 감시원의 전문성 또는 책임이 간과될 수 있고, 법적 보호 또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가 그 수행에 있어 관련 지식을 요구하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관리·운영 업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제도 명칭 중 “명예”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관리 지역의 실정을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지식으로 본다면, 제도의 명칭에서 “명예”를 삭제하여 “감시원”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유사 입법례의 명예감시원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재 공사가 운영 중인 수리시설감시원은 더 많은 수당을 받고, 더 오랜 기간 활동하고 있으며,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그리고 현재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리시설감시원의 사기 진작 여부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정안의 “명예수리시설감시원”을 “수리시설감시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